교육위원후보자선출안(번안)

제안이유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 第5條第2項 및 同法 施行令 第4條의 규정과 第3回 우리區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시 本議員등 7인의 의원이 제안한 "教育委員候補者選出案" 제안이유 및 주문에 근거하여

○경력자 1명의 후보선출을 위하여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 第5條의 규정과 麻浦區會議規則 第23條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안을 翻案 제안함.

주 문

○第3回 우리區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非經歷者 1인의 교육위원 候補를 選出하였으므로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 第5條第2項 및 同法 施行令 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臨時會議시 經歷者 1명의 후보를 선출하되

○選出方法은 유일한 經歷者 候補인 朴容仁 후보로부터 5分 이내의 재소견을 듣고난 후

○다음 3가지의 안중 의회의 의결로 하나의 안을 선택하되 안의 선정 방법은 다음 세개의 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表決을 실시하여 1차 표결에 過半數 찬성안이 없을때에는, 最高 득표안과 차득표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여 그중 다수표를 얻는 안을 선정함.

(제 1 안)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 第5條第2項의 규정에 따라 自治區議會에서는 經歷者 1인의 후보를 포함 2人의 후보를 선출토록 되어 있고, 서울市議會의 質疑에 대한 教育部 回示內容인 自治區議會가 입후보 登錄된 經歷者를 除外하고, 非經歷者 1인을 추천하는 것은 法 第5條第2項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指摘하고 있으며 自治區 의회에는 立候補 등록된 者 중에서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推薦하여야 한다는 回示內容에 따라 우리區 議會에 登錄된 經歷者 候補는 1인이므로 投票節次없이 무조건 추천함.

(제 2 안)

經歷者 教育委員候補 推薦對象者가 1인이고 登錄된 經歷者 候補가 비록 1인이지만 推薦찬성에 대한 祕密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投票結果가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 第5條第2項과 상충될때에는 討論과 表決을 생략하고, 地方議會議員選擧法 第129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登錄된 經歷者 候補가 推薦對象經歷者候補를 넘지 아니하므로 教育委員推薦 종기到來日에 推薦對象者로 選定된 것으로 본다.

(제 3 안)

經歷者 教育委員候補 推薦에 대한 方法은 의결로 결정한다.

教育委員候補者選出(案)翻案第1案의修正案

1991.6. 教育部 會議資料(教育委員 選出業務)의 候補者의 選出과 推薦 事例別 處理方法중 다음 事例의 경우는 會議의 決定에 따라 處理하되, 無投票選出이 되지 않도록 함.

(投票節次를 勸告 : 過半數 得票)

1人만 登錄된 경우

經歷者 1人과 非經歷者 1人이 登錄(합계 2人) 되었거나…

에 의거 1991.7.20 本會議에서 教育委員候補者 投票를 실시한바 教育經歷候補者 選出이 否決되었던 바 地方教育自治에關한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自治區議會에서는 經歷者 1인의 候補를 포함 2인의 候補를 選出토록 되어 있고 서울市議會의 質疑에 대한 教育部 回示內容은 自治區議會가 입후보 등록된 경력자를 제외하고 비경력자 1인을 추천하는 것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指摘하고 있으며 自治區議會에는 立候補 登錄된 者 中에서 經歷者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推薦하여야 한다는 回示內容에 따라 우리구 議會에 登錄된 經歷者 候補는 1인이므로 投票節次없이 무조건 추천할 것을 動議함.